

업무협력 협약서(안)

(재)서울디자인재단 | (주)이니스프리

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과 (주)이니스프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두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양 기관의 유기적인 콘텐츠 개발과 사업교류 협력을 통하여 DDP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디자인 콘텐츠 확산과 공익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의성실의 원칙)

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을 준수하며, 상호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사업에 임한다.

제3조(업무협력)

양 기관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며,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.

(재)서울디자인재단	(주)이니스프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공간 활성화를 위한 행사 기획 및 협업행사 운영 및 공간 지원대내외 협업 및 홍보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공익목적사업 운영(무료메이크업, 교육 등)운영을 위한 상품, 서비스 제공지속적인 데스크 운영, 위생, 매장 환경 관리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대내외 협업 및 홍보 등시설사용 관리비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※ 관리비는 사용면적 x 11,000원(적용단가)사용면적: 62.86㎡(전용면적44㎡, 공용면적18.86㎡)※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행 후 7일내에 납부※ 실비 별도정산(전기세)향후 '이니스프리'가 '서울디자인재단'측에 그린라운지 키오스크를 기부채납

1. 사업방향 협의 및 결정은 양 기관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며, 원활한 정보교환을 통해 긴밀한

협력 체계를 구축한다.

2. 본 협약에 의한 세부 사항은 양 기관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, 양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.

3. '이니스프리'는 이벤트 운영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제공제품의 파손에 대해 보수를 지원하고, 분실 시 추가 공급하되 상호 협의하여 그 수준을 정한다.

제 4 조 (해제·해지 및 손해배상)

1. 협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이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해지·해제할 수 있다.

1) 상대방에게 이 협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4 일 이내에 이행/시정하지 않은 때

2)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·수표가 부도 등 지급되지 않은 때

3) 기업개선작업(work-out), 회생절차, 파산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가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때

4) 가압류, 가처분, 압류, 강제집행 등 신용에 위험이 발생하여 협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

5)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조치로 인하여 협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

6) 상대방이 제공한 영업비밀(개인정보 포함)이 공개, 유출 등 협약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

7)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협약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때

8) 상대방의 신용, 이미지훼손, 신뢰관계 파괴 등 기타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

2.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이 해지·해제되는 경우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,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5조 (권리의무의 양도금지)

1. 협약 당사자는 이 협약상의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도급, 양도, 승계, 위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2.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해 이 협약상의 책임과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한다.

제6조(분쟁해결)

1. 이 협약의 해석, 유효성 및 이행, 분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.

2.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의 해석 및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협약당사자 상호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상관습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,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그런라운지 키오스크 소재지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7조(보안)

1. 협약 당사자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,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얻게 되는 일체의 자료 및 정보(개인정보 포함)·노하우(know-how)를 상대방의 영업비밀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취급·관리하여야 한다.
2. 협약 당사자는 제1항에 의한 상대방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·공표·유포·누설·전송·출판 및 훼손(이하 "유출")하여서는 안 되며,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3. 협약 당사자는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접근이 허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나 정보, 시스템, 시설, 인력에 접근하지 않으며,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의 의무 위반이 없도록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4. 협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하여 그 보관 및 관리 상태의 점검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5. 협약 당사자는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이 조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 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,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, 사건 조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.
6. 협약 당사자는 협약기간 중 상대방의 요청이 있거나, 협약 종료 후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얻게 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를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반환이 곤란한 경우 상대방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한 후 상대방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.
7. 이 조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, 손해배상과 별도로 이 협약의 즉시 해지사유가 된다.
8. 이 조항은 이 협약기간은 물론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.

제8조(효력 및 해지)

1. 본 협약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2년간 유효하다.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그 효력은 연장된다.
2. 본 협약서의 효력을 중도에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하여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한다.
3. 본 협약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.
4.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본 협약의 효력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할 경우 '이니스프리'는 효력기간 만료 시에 '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'에 그린라운지 키오스크를 기부채납한다.

제9조(보관)

이 협약의 진정한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기(서)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.

2017. 10. 26.

Seoul Design
Foundation

innisfree

(재)서울디자인재단

이 근 (인)

(주)이니스프리

김 영 목 (인)

